

의안번호	제467호
의결 연월일	2013년 월 일 (제319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3년 4월 4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7
----------	-----

제출연월일 : 2013. 4. 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1600호, 2012.12.21.), 「특수입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1029호, 2011.8.4.), 「아동복지법」의 개정(법률 제11002호, 2012.8.5.)에 따라 수수료 징수 면제 인용 법률을 정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을 목적 규정에 사용하지 않고 목적 규정 다음에 대상 단어가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약칭’을 사용(안 제1조, 제2조)

나. 수수료 징수 면제 인용법률 제명 변경(안 제5조제2항제1호)

-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명을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
- 2) 「특수입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명을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

다. 수수료 징수 면제 인용법률 조문 변경(안 제5조제2항제2호)

- 1) 「아동복지법」 제2조를 「아동복지법」 제3조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1. 18. ~ 2013. 2. 7.) :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각종수수료(이하“수수료”로 한다)”를 “각종수수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수수료”를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으로 하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아동복지법」 제2조”를 “「아동복지법」 제3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u>각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u>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각종수수료</u> ----- ----- ----- -----.</p>
<p>제2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u>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5. (생략)</p> <p>② (생략)</p>	<p>제2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u>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u>-----.</p> <p>1.~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 (생략)</p> <p>② 신원 및 학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u>「고엽제후유의증</u></p>	<p>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 ----- ----- <u>「고엽제후유의증</u></p>

현행	개정안
<p>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p> <p>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자</p> <p>③~⑥ (생략)</p>	<p>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p> <p>2. ----- ----- ----- ----- 「아동복지법」 제3조, ----- ----- -----</p> <p>③~⑥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2.9.22] [법률 제11399호, 2012.3.21, 일부개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9.1] [법률 제11141호, 2011.12.31, 타법개정]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대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1] [법률 제11332호, 2012.2.17, 일부개정]

제15조(교육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②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 2.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2.12.21] [법률 제11600호, 2012.12.21, 일부개정]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⑨ 국가보훈처장은 제7항 본문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자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및 제4장을 준용하여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하되,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때에도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지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2.3.21] [법률 제11417호, 2012.3.21, 일부개정]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1.8.4] [법률 제11029호, 2011.8.4, 일부개정]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유공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48호, 2012.2.1, 일부개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1호, 2012.2.1, 일부개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3.1.27] [법률 제11240호, 2012.1.26,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 2012.8.5] [법률 제11002호, 2011.8.4, 전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과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2.3.21] [법률 제11384호, 2012.3.21, 타법개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